

법과 기술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과 기술을 비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 요즘 IT, BT, NT, ET, ST 등 신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망을 벗어나는 또는 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범위까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즉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기술이어서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발명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도록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인간을 복제하는 연구에서 다른 동물(생쥐)과의 합성인간에 대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고자하는 발명가가 있었는데, 인간과 생쥐를 합성할 때 과연 어느 정도 혼합%이면 법에서 정한 인간이고 동물에 해당하는 지 논란이 있었다. 한마디로 50:50(인간:생쥐)인 생쥐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서 특허대상이 아니므로 특허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동물로 보아서 특허로 보호해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법으로 인간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법은 법이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이어야 하는데, 왜 이들 사이에 이상한 관계가 존재해서 세상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것일까?

나는 기술보다는 법이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과학기술자들은 법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조차 안하려고 한다. 2가지 정도 예를 들고 싶다.

먼저, 고분자수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는 '수지'자체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어쩔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수지(RESIN)"는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플라스틱)를 말하는데, 이는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합성고분자재료를 말하며 이

로부터 접착제, 코팅, 또는 플라스틱 제품이 얻어진다. 즉 수지를 충전제, 안료, 산화방지제 등과 같은 첨가제와 같이 섞어서 압출하면 플라스틱 재료가 얻어진다. 합성수지에는 석유정제시에 생성되는 것과 순수한 단량체를 중합하여 생성되는 것이 있으며 분자량이 아주 낮은 경우 석유수지라고 한다. 하지만, 재생품인 경우에는 수지라고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단순히 합성한 것만을 수지라고 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첨가제가 제거되어 재생된 것이라면 수지라고 하기 때문에 법과 기술에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왜냐면 물품세법에서는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만이 수지에 해당하고 단순히 형태를 바꾼 것은 수지라고 볼 수 없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1.6.22. 선고 71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HIP)은 개정 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다른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원료인 합성수지 자체의 형태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나이론 재생칩(CHIP)은 개정 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4호의 "수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류 제4호, 물품세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3류 제4호

법이 우선되는 판결임에 틀림이 없다. 또 하나, 복권은 왜 신용카드로 살 수가 없는 것인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요즘 성인이라면 신용카드 한두 장씩은 갖고 다닌다. 대부분 거래에서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카지노의 칩, 경마장 마권, 복권 등이다. 다른 모든 것은 신용카드로 다 살 수 있는데, 왜 복권은 안되나? 사행성이어서, 당첨안되면 환불해달라고 할까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은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 구입으로 한정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카지노 칩의 경우 '카지노 영업준칙'에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 화폐'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물품이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마

권에 대해서도 일종의 '조건부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복권의 경우 법제처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모든 것에 법이 우선이다.

이에 과학기술도 예외도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법테두리에서 연구나 발명을 해서 보호를 받거나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어떤 판사님이 다음과 같이 재판과 법의 한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를 증거법칙 내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진실을 찾아 법적사실로 확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제도적 불완전함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법적사실과 진실이 차이가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법과 재판제도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불행과 불공평함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간으로서는 항상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옳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억울하다고 해도 법이 우선하는 한, 법테두리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끝.